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제로페이로 이용료 및 사용료 결제 시 감면(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용료 감면(할인)혜택을 통해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 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 10% 감면(할인) 규정 마련
- 2019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적용기한 규정
 -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연번	자치법규 명	개정 내용	비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 수강료의 10% 감액	조례안 제1조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의 10% 감액	조례안 제2조
3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시설사용료와 수강료의 10% 할인	조례안 제3조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연회비의 100분의 10 감액	조례안 제4조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등의 10% 감액	조례안 제5조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이용료의 10%감액	조례안 제6조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등의 10% 감액	조례안 제7조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등의 10% 할인	조례안 제8조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주차요금의 10% 감액	조례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304호, 전화 : 450-7314, FAX: 457-0700, 이메일: chs1@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10%를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별표의 시설사용료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등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등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6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8조제3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7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등)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10조(사용료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⑥ · ⑦ (생 략)	⑦ · ⑧ (종전 ⑥ · ⑦과 같음)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생 략)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③ (종전 ②와 같음)

3.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용료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8조(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

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별표의 시설사용료의 10%를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연회비 징수)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9조(연회비의 징수)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④ ~ ⑥ (생 략)

경우에 한한다.

⑤ ~ ⑦ (종전 ④~⑥과 같음)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등) ①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9조(사용료등) ① ~③ (현행과 같음) ③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u>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u> <u>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u> <u>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u> <u>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u> <u>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u> <u>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u>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u> <u>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u> <u>사용료등의 10%를 감액할 수</u> <u>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u> <u>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u> <u>한한다.</u>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용료 등)</p> <p>① (생 략)</p> <p><신 설></p>	<p>제11조(사용료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 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p>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p> <p>① ~ ④ (생 략)</p> <p><신 설></p>	<p>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p>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
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
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
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
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게 사용료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8조(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 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 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 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 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 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

용료등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③ (생 략) <u><신 설></u>	제4조(사용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 정보처리운영체계)을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